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594739, 2015가합1679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제일스포츠센타

독립당사자참가인 B

변론 종결 2015. 10. 5.

판결 선고 2015. 11. 12.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1. 9.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1,4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 별지 내역 기재 주식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 내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재일교포 70명이 출자하여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는 2002. 6.경 액면금을 5,000만원으로 하는 보통주식 7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25. 피고에게 위 70주 중 별지 내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주권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4억 5,400만원에 매도하면서, 그대금지급일을 2014. 10. 2.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보관증을 분실하여 이 사건 보관증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의 아들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9. 15. 피고에게 "원고가 2000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서는 안 된다. 참가인을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다음날인 2014. 9.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22.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받았음을 알리면서, 참가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2014. 9. 30.까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이 사건 보관증은 현재 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참가인은, 20여 년 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참가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명의 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또한 만일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보조참가신청으로 선행하여 달라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도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 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참조).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본소 청구로써 주장하는 권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청구권인 반면,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9. 15.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4) 따라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보조참가로 선해하여 달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독립한 당사자로서 원 · 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거에 해결하려는 제도이고, 보조참가는 원 ·

피고의 어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보조참가를 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22473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보조참가로 선해하여 달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보관증을 분실하여 이 사건 보관증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미 이

사건 주권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간이인도(민법 제188조 제2항)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인 피고는 매도인인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14억 5,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1.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100분의 15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시행일인 2015. 10. 1. 당시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적용될 위 특레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15%이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보관증이 추후에 주주가 회사에 이 사건 보관증을 제시할 경우 이 사건 보관증과 상환으로 이 사건 주권을 반환하겠다는 특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의 성질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보관증을 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면서 참가인에게 위 주식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참가인에게 위임하는 취지로 이 사건 보관증까지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4. 9. 16.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보내왔으므로 피고로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지위에 있음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놓고도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88조). 한편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주권의 교부'는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는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권의 보관자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인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보관증에는 이 사건 주권을 이 사건 보관증의 소지자에게만 교부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권을 간이인도의 방식으로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실제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가사 실제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피고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로써 주권의 교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 9. 15. 간이인도의 방식으로 주권을 교부받아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참가인으로부터 위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바가 없고 피고가 그 양도를 승낙한 사실이 없는 이상(피고는 2014.9. 16. 비로소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참가인에 대한 주권의 교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인숙, 판사 노미정, 판사 곽용현

[별지]

주식 내역

1. 주 권 번 호 : 제54호
2. 1주의 금액 : 5,000만원
3.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일스포츠센터
4. 소 재 지 : 안산시 상록구 태마당로 28
5. 주 식 수 : 보통주식 1주. 끝.

